

높은뜻광성교회 제2대 담임목사 청빙 운영세칙

제1조 (목적)

- ① 이 세칙은 높은뜻광성교회(이하 “교회”라 한다)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제8조와 청빙위원회 회칙 제9조 1항의 규정을 근거로 ‘높은뜻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청빙’을 위해, 제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청빙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청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청빙
 - 2. 감.격.함으로 하나되는 청빙
 - 3.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청빙
 - 4. 모든 성도의 기도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청빙

제2조 (담임목사 청빙 자격요건)

담임목사 청빙 기본규정 제7조 1항~5항의 기본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① 연령 : 45세 ~ 55세 (1970.1.1.~1980.12.31.)
- ②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 ③ 소속 교단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④ 경력 : 본 교단 목사 안수 후 공고일 기준 7년 이상 목회 경력자 (휴직기간 제외)
- ⑤ 본 교단 헌법에서 정하는 무흠한 자
- ⑥ 청빙위원회가 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

제3조 (청빙 방법)

- ① 청빙 공고는 본 교회 홈페이지, 기독교보 및 기타 등등 공개적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다.
- ② 공고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제출 서류)

- ① 1차 서류 : 지원서류 (지원할 때의 구비서류)
 - 1. 지원서 (별첨 서식1)
 - 2. 자기소개서 (별첨 서식2)
 - 3. 목회계획서 (별첨 서식3)
 - 4. 추천서 2부 (필수-목회자 1부, 선택-기타1부, 별첨 서식4)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첨 서식5)
 - 6. 서약서(별첨 서식6)
 - 7. 배우자의 자기소개서(별첨 서식7)
- ② 2차 서류 : 면접서류 (면접 대상자가 제출할 구비서류)
 - 1. 교단 소속 증명서
 - 2. 목사안수 증명서

3. 대학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6. 예배설교 동영상 1편 (24년중 설교한 파일)
 7. 신체검사서(비용은 교회부담)
 8. 범죄경력증명서
- ③ 청빙위원회는 상기 ①항, ②항에 명시된 서류 외에 청빙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종류)

- ① 심사 종류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영상설교심사, 3차 종합심사로 한다.
- ② 서류심사란 접수 및 제출된 서류로 실시하는 심사를 뜻한다.
- ③ 면접 및 영상설교심사란 서류심사를 합격한 후보자에 대한 면접과 제출한 예배설교 동영상 시청을 시행하여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 ④ 종합심사란 청빙위원 간에 후보자별 장단점 토론을 통해 당회에 보고할 최종후보자2~3인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말한다.
- ⑤ 청빙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추가하여 할 수 있다.(배우자 포함)

제6조 (심사 방법과 기준)

- 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빙위원회 각 위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가운데 공통된 의견을 집약하여 최종후보자를 결정하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심사방법으로 택한다.
- ② 상기 ①항의 시행을 위하여 심사방법과 기준을 서식으로 정하고, 그 기준과 서식에 의하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청빙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다만, 심사 과정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청빙위원 만장일치로 비밀유지서약을 받아 외부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④ 서류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접수되는 지원서들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보관한다.
 2. 지원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청빙 위원회 위원 전원이 입회하여 보관했던 지원서들을 개봉하고, 선별하여 심사한다.
 3. 서류심사의 평가는 서식에 의거하여 점수로 표시 한다(별첨 평가표1).
- ⑤ 면접 및 영상설교심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면접심사(인터뷰)는 심사자와 지원자가 서로 대면하여 실시하는 심사로써 정하여진 기준과 서식에 의하여 점수로 평가한다(별첨 평가표2-1)
 2. 영상설교심사는 제출한 예배설교 동영상을 바탕으로 실시하며 정하여진 기준과 서식에 의하여 점수로 평가한다(별첨 평가표2-2)
 3. 2차면접평가결과 각 항목별 평가점수(1~5점)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평가평균점수가 2.0점 이하 자는 3차 종합심사대상자에서 제외된다.
 4. 제6조 5항에 근거하여 필요시 심층면접을 위해 추가면접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심층면접시에는 지원자와 배우자가 함께 면접하도록 한다.
- ⑥ 종합심사 방법은 1·2차 심사결과와 사실확인 내용을 기초로 3차 평가 항목에 따른 후보자

별 장단점을 토론하고 심사하여 최종후보자로 압축한다(별첨 평가표3)

제7조 (최종후보자 선정 과정)

- ① 후보자 선별 과정은 청빙 공고,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 대상자 선정, 면접 및 영상설교심사, 종합심사, 청빙 최종후보자 선정의 과정으로 한다.
- ② 각 과정별 선정한 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1. 1차 서류심사를 하여 면접 대상자를 15명 이내로 선정한다.
 2. 2차 면접 및 영상설교심사를 하여 종합심사를 할 대상자 5명 이내로 선정한다.
 3. 3차 종합심사를 통하여 청빙 최종후보자 2~3인을 선정한다.

제8조 (최종청빙대상자의 선정과정과 절차)

- ① 청빙 위원회는 선정절차를 마친 후 청빙 최종후보자(2~3명)를 당회에 보고한다.
- ② 청빙 위원회는 당회에 청빙 최종후보자(2~3명)를 보고할 때에는 당회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심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청빙위원회는 청빙 최종후보자들에게 전교인을 대상으로 주일예배설교를 시행하고, 3주에 배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교인들에게 후보자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설교주제는 청빙위원회가 정한다.
- ⑤ 최종순위후보자추천단은 최종후보자의 설교청취 후 청빙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 기본정보를 참조하여 전자투표에 의하여 후보자 순위투표를 한다

제9조 (청빙과정소통) 청빙 위원회는 청빙에 관한 일정을 공고에서부터 최종 청빙대상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당회에 보고하고 전 교인과 수시로 소통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관리)

청빙위원회는 청빙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정리하여 당회에 인계하며, 행정목사는 5년간 관련자료를 보관한다. 단, 청빙지원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당회 승인일(24.12.15)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권한의 위임) 이 세칙에 정함이 없는 것은 청빙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